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3일 18시 28분



# 목차

목차	2
자료실 - 의약정보	3
코로나 <sup>19</sup>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알림	3

##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알림

2022.08.08 조회수 1116 등록자 김송희

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재유행 및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, 전국 7개 편의점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('22. 7. 20. ~ '22. 9. 30.)조치하였으니, 붙임의 식약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

전체(Zip)다운로드



붙임1.공고문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-330호, 2022.7.20.)\_FE4E.tmp.pdf (13599 hit/ 42.7 KB) ↓

미리보기

목록

이전글

원숭이두창 관리(의료기관 대상) 교육 영상 배포 ...

다음글

코로나19 예방접종 문진표(18~49세 기저질환자)

# Yeosu Web Contents

